

## 4단계 BK21 탄소융합혁신인재양성단 운영규정

(2021. 6. 7.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BK21 탄소융합혁신인재양성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연구단은 본교 대학원 탄소융합공학과와 구성원 중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과 연구단의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참여대학원생”이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본교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으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군복무 및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이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선발하여 연구장학금을 수혜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③ “박사후과정생”이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을 말한다.

④ “행정인력”이란 연구단 소속으로 BK21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신진연구인력과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제외한다. <신설 2023.12.15>

### 제2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제4조(참여교수 선정)** 참여교수의 초기 선정은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7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사업기간 전 기간에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
2. 최근 5년 동안의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
3.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을 만족하는 교수

**제5조(참여교수 증가)** ① 참여교수 증가(추가)는 연구단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 이외에 새로운 교수가 연구단에 참여하여 연구단의 전체 참여교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참여교수 증가는 한국연구재단 기준을 만족하는 참여교수 중에서 연구단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단계 BK21 사업 신규 참여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교원이면서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기준을 만족하는 자
2.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을 만족하고 연구단 소속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구실적을 상회하는 자

③ 참여교수 추가 승인 후 증가된 참여교수의 전체수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교수 교체)** 연구단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가 연구년,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수가 탈퇴한 교수를 대신하여 연구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팀 전체 참여교수의 수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경쟁유도를 위하여 연구실적에 따라 기존 참여교수와 미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제3장 참여교수 성과급

**제7조(성과급의 목적)** 성과급은 연구단 수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촉진하고 참여인력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8조(대상자금)** 이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제9조(지원조건 및 지원액수)**

- ① 국고지원금에서는 1명당 연 6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5.>
- ② 매년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액수는 연구단장이 정한다.
- ③ 4단계 BK21 사업 운영에 기여 및 국제학술회의 활동 등을 연계하하며, 예산에 따라 기준 및 점수가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평 가 항 목 |        |    |      |    |   |      |         |     |    |
|---------|--------|----|------|----|---|------|---------|-----|----|
| 순       | 항목     | 기준 | 점수   | 비고 | 순 | 항목   | 기준      | 점수  | 비고 |
| 1       | 지도학생   | 1명 | 25점  |    | 6 | 학술대회 | 1편      | 5점  |    |
| 2       | 연구비수혜  | 1건 | 100점 |    | 7 | 국내특허 | 1건      | 10점 |    |
| 3       | SCI논문  | 1편 | 20점  |    | 8 | 국외특허 | 1건      | 20점 |    |
| 4       | 비SCI논문 | 1편 | 10점  |    | 9 | 기타   | 연구단장 재량 |     |    |

### 제4장 대학원생 지원

**제10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지원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연구단장과의 협의에 따라 선발된다.

**제11조(지원기간)** ① 과제수행 기간 동안 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를 위하여 학생별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은 월별 지급하며 학생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15.>

**제12조(지원금액)** 지원대학원생에 대해 석사 월 10만원, 박사 월 16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연구활동 기여도, 대학원 수업 충실도, 지도교수 평가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센티브)** ① 제12조에 따른 지원금 외에도 우수 학생이나 연구단에 기여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및 연구단장의 심의 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행정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지급액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15.>

- 제14조(의무)** ① 지원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단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연구단의 요구에 따라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되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지원 기간 중 취업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진 보고해야 하며 사업 지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제15조(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연구교수로 구성한다.

**제16조(임용절차)** ① 신진연구인력 중 연구교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는 연구단에서 진행한다.

② 박사후과정생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며 계약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의무)**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연구단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논문, 학회발표)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금액 및 성과급)** ① 계약금액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020.12.24. 제정)’에 따른 지급기준(박사후 과정, 계약교수 월 300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학술실적에 따라 결정한다.

②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논문성과급, 계약금액 조정, 여비지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해외 석학 초빙

**제20조(초빙목적 및 효과)** 해외 석학의 초빙은 단기 집중 학생 지도, 공동연구 및 최신학술성과 발표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 및 연구원을 초빙하여 새로운 분야 및 최신연구이론 연구로 연구단의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초빙기간)** 초빙기간은 가능한 학기 중에 초빙하되 초빙학자의 사정에 따라 방학 중에도 초빙할 수 있다.

**제22조(초빙자 선정 및 경비)** 해외석학은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연구단 내에서 결정하며 강의료 등 지급액은 본교 규정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장단기 해외 연수

**제23조(해외연수실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개선을 위하여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외연수학생의 선정이나 금액 및 참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결정하며 해외연수는 장기해외연수와 단기해외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15.>

**제24조(장기해외연수)** ① 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으로 넓혀 연구 실적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장기해외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② 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및 교육성과,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어학실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기해외연수에 적합한 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③ 장기해외연수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구분: 항공료, 교육훈련비, 국외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2.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교육훈련비, 국외체재비 및 의료보험료는 지급기준 이하의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위탁기관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회의에서 확정하며 대학원생의 전공 실력 배양 및 미래 연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⑤ 해외장기 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해외연수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의 책임자가 발행하는 연수이수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단기해외연수)** 단기해외연수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규정」 및 본교 지침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12.15.>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